

「기상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일부개정 2015. 6. 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통령훈령 제289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 등의 의무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청의 각 부서(각 국·관 및 이에 속하지 않는 부서, 이하 “부서”라 한다)와 소속기관(국립기상연구소·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비위사건 처리기준) ①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비위사건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비위공무원의 고의성 또는 상습행위(비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동일한 비위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가중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비위공무원의 혐의에 대한 처리기준이 복합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항의 비위사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상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비위공무원의 혐의가 비위사건 처리기준의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및 「기

상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따르며,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 관련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징계 부가금)에 따라 비위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동시에 요구하여야 한다.

⑤ 비위공무원의 혐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 예외적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간통·성폭행 등 친고성 범죄에 있어 고소취하 등의 사유로 사법기관에서 기각 처리한 경우에도 자체 조사 후 처분할 수 있다.

나. 문책을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등 범죄 사실을 은폐한 것이 드러났을 때 아래와 같이 당초 기준의 차상위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 기준 : 주의 ⇒ 경고 ⇒ 경징계 ⇒ 중징계)

다. 운전원이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한 다음의 경우

㉠ 면허취소 :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 **중징계**

㉢ 기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 **경징계**

㉣ 공무상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중 위 ㉠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및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관련 증거서류를 포함)를 제출하여,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후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 공무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한다.

제4조(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감사담당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적용한다.

- 나.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증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 다.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제5조(비위·범죄사건 처리 절차) ① 수사기관 등의 통보서를 포함한 공무원의 비위·범죄사건 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가. 통보서를 접수한 각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보서가 기상대 또는 기상실로 접수된 때에는 즉시 직근 상급기관으로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하여, 지방기상청 또는 항공기상청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가”항에 의하여 보고하는 내용은 통보서 사본, 경위서(당사자 작성, 별지 1), 직원복무사고보고(소속기관 주무부서 작성, 별지 2) 등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다.
- 다. 소속기관에서 접수한 통보서 중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문서 일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한다.
- 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서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가 필요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관련부서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6조(비위·범죄사건 결과 처리) ① 공무원 비위·범죄사건의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가. 본청 각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내부종결 및 주의·경고 처분은 청장의 명으로 한다.
- 나.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내부종결 및 주의·경고 처분은 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 후 소속기관의 장의 명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청장의 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비위·범죄사건의 처분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통보서를 접수한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주의·경고·징계 등의 처분이 종료된 직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 라. 감사담당관은 관련사실의 추가확인 등 필요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조사(수사)기록의 조회를 요청하고, 비위내용이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범죄 처리와 고발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감사담당관은 기상청 공무원의 비위·범죄의 사실 확인과 조치 및 그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중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중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 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 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 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 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성매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마. 기타(교통사고 및 일반 범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위 유형	수수 행위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정직	강등	해임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 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 요구+징계부가금 부과 요구(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은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지 1]

경 위 서

- 소속
- 직급
- 성명

상기인은 지난 00월 00일 00시 00분경 -----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2011. 11.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2]

직 원 복 무 사 고 보 고

【 2011. 11. .() / 00지방기상청 00과 】

대상자

- 소속
- 직급
- 성명

사고내용

○

사고경위

○

○

조치계획

○